

##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

산업경제위원회  
2002. 12. 3.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207회 정례회

-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02. 12. 3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 이유

- 21세기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법인을 설립하고,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 골자

- 법인명칭을 “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”으로 함(제2조)
- 반도체산업 및 전자정보부품산업의 육성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(제5조)
- 재단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(제6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7조)
- 재단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(제9조)
- 재단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근무할 수 있도록 함 (제10조)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응 희)

-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1세기 신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기술산업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-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는 업무감독과 필요시 조사, 감사 등을 할

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개의 조항으로 삽입해야 할 것과

- 중앙, 도,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외에 발생되는 기타 수입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또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10호와 제9조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별첨

- ◎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

- 충청북도지사제출

##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

의 안  
번 호

34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  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제정이유

- 21세기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우리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법인을 설립하고,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법인명칭을 “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”으로 함 (제2조)
- 반도체산업 및 전자정보부품산업의 육성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(제5조)
- 재단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(제6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7조)

- 재단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(제9조)
- 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근무 할 수 있도록 함 (제10조)

**의안전문 : 따로 붙임**

**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**

##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전자 및 정보분야 등 정보통신 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“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”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.

제4조(정관)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
6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8.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
11.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반도체산업 육성지원
2. 전자정보부품산업 육성지원
3. 장비 및 부품의 연구, 생산, 테스트, 기술개발 지원
4. 산·학·연 공동기자재 활용 지원기술창업 지원
5. 교육·훈련 지원 및 기술·정보 네트워크 구축

제6조(재산출연)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
2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3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, 후원인 등의 출연금

제7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9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

제10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-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# □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4조(설립허가 기준)

-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·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### □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(잔여재산의 귀속)

-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(생략)

□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(보조대상)

-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(겸임)

-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·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·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 기타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 기타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(파견근무)

-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기관·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·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- ② ~ ④ (생략)